
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, 표준금융소비자기준 개정 시행 안내

□ 배경

-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(이하 “금소법 감독규정”) 개정(25.11.25)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여신금융업권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」, 「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」을 개정
- 이에 따라 협회에서 기 배포한 모집법인용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예시(안)에 금번 개정 내용 반영하여 안내

□ 주요 내용

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
 - 성과보상체계 수립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및 개선요구권 신설
 -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준수실태 점검 및 조치, 금융소비자 보호실태평가 및 감독·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관리업무 신설
 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단순 보고 근거 마련
 - 조정·의결사항 중 정보전달 성격의 단순 보고사항*의 경우 ‘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* 법령 등 개정에 따른 경미한 제도개선, 정기공시사항,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

□ 추가 안내 사항

- 모집법인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절차에 따라 감독규정 시행일(26.1.1)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
-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는 단순 예시임에 따라 자사 운영 중인 표준 내부통제기준, 표준소비자보호기준에 맞게 조정 운영

※ 붙임 :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예시(안) 1부. 끝.

-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 운영 근거 마련
- ※ 여전업권 자율규제 개정(안)과 동일
-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맞게 자구 정비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
<u>6.</u>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”라 한다), 감독(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“감독”을 말한다) 및 검사(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“검사”를 말한다) 결과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<u>7.</u> 중요 민원·분쟁에 대한 대응 결과 <u>8.</u> 광고물 제작 및 <u>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</u> 기준 및 절차 <u>9.</u> 상품설명서 등 금융상품 계약서류 제 개정안 검토(준법감사인이 해당 계약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) <u>10.</u>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 <u>판매·사후관리</u> 등 관련 부서간 협의 필요사항 중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	바.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”라 한다), 감독(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“감독”을 말한다) 및 검사(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“검사”를 말한다) 결과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사. 중요 민원·분쟁에 대한 대응 결과 아. 광고물 제작 및 <u>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3호가목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의</u> <u>광고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</u> 기준 및 절차 <u><삭제></u> 자.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 <u>판매·대리중개·사후관리</u> 등 관련 부서간 협의 필요사항 중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	-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맞게 자구 정비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
<u><신설></u>	2. 보고사항 가. 제4항제1호나목에 관한 사항 중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경미한 제도개선 사항 나. 제4항제1호다목에 관한 사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다. 제4항제1호마목에 관한 사항 중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 기준"이라 한다.)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,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의 조치결과	-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 운영 근거 마련 ※ 여전업권 자율규제 개정(안)과 동일
제22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② (생략) ③ (생략) 1.~5. (생략) <u>6. <신설></u> <u>7. <신설></u>	제22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~5. (현행과 같음) 6.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·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·조치 (신설) 7.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, 감독(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"감독"을 말한다) 및 검사(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"검사"를 말한다)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(신설)	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(점검·조치 업무, 후속조치 관리 업무) ※ 여전업권 자율규제 개정(안)과 동일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6.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. 위원회의 운영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) 10. <신설> 제31조(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) ① (생략) ② 회사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<u>매년 금융상품 판매</u>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기 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.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<u>의견 확인 시</u>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<u>판매</u>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. ④ ~ ⑥ (생략)	8.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9. 위원회의 운영(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) 10.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고사항으로 처리되는 업무의 적정한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·평가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제31조(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회사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<u>매년 금융상품 판매 대리·중개</u>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.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<u>사전 합의 시</u>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<u>판매 대리·중개</u>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, 성과평가지표(KPI)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 보상체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	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(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) ※ 여전업권 자율규제 개정(안)과 동일 -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맞게 자구 정비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이 유
부칙 제1조(시행일) (신설)	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
제1조 ~ 제8조 (생략) 제9조(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 및 평가) ① (생략)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평가하고,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조정·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부칙 제1조(시행일) (신설)	제1조 ~ 제8조 (현행과 같음) 제9조(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 및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평가하고,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조정·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치 결과가 주의,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일 경우 조정·의결 없이 보고할 수 있다. ③ (현행과 같음)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-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 운영 근거 마련 ※ 여전업권 자율규제 개정(안)과 동일